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10
----------	-------

발의연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한정애 · 김 윤 · 정준호
김남근 · 조계원 · 임미애
허성무 · 이기현 · 박홍배
조인철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건축물 등의”를 “건축물,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등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새로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는 구조물 중 이 법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조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u>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p> <p>4. ~ 7. (생 략)</p> <p>② (생 략)</p>	<p>제2조(정의)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건축물, 구조물(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등의</u>----- -----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